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로 인해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
연번	발급 대상자	세대주	통지서 발송일자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비고
1	박주언	정우남	2023. 8. 30.	2023. 9. 1. ~ 2024. 8. 31.	-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,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 (과태료)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3년 9월 18일

생 연 1 동



소관 부서	생연1동 행정복지센터	담당자 직·성명	지방행정서기보 백승호	전화번호	031-860-3015
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